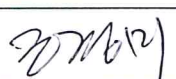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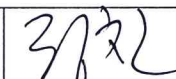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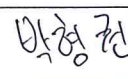


## 동서대학교 평의원회 회의록

동서대학교 평의원회 회의			
회의소집일시	2019년 5월 21일(화) 15:00		
회의일시	2019년 5월 29일(수) 13:00		
재적의원	11명	참석의원	11명
회의장소	뉴밀레니엄관 4층 회의실		
회의안건	1. 학칙 개정(안) 2. 평의원회 규정 개정 필요성		
회의내용			
<p>1. 회의진행</p> <p>가. 조경미 의장이 전원 참석으로 성원이 됨으로 개회를 선언하다.</p> <p>나. 조경미 의장이 본 안건 심의에 앞서 전회 회의록 회람 및 회의록 수정사항에 묻다.</p> <p>다. 조경미 의장이 전회 회의록에 대한 수정사항 없음을 확인하고, 전회 회의록을 확정하다.</p> <p>라. 조경미 의장은 금일 회의 요지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본 안건 심의에 들어갈 것을 선언하다.</p> <p>2. 본안건 심의</p> <p>(1) 학칙 개정(안)</p> <p>가. 조경미 의장이 먼저 조대수 기획연구처장에게 학칙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다.</p> <p>나. 조대수 기획연구처장이 별첨의 학칙 개정(안)과 같이 전과 제한 폐지, 재학연한 폐지와 융합연계전공에 대해 설명하다.</p> <p>다. 조경미 의장이 각 위원들에게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p> <p>라. 정찬 부의장이 융합연계전공에 대해 질의하다.</p> <p>마. 조대수 기획연구처장이 기존 연계전공이 전공간 연계에 치우친 것이라면 융합연계전공은 전공간 융합의 관점에서 주전공, 복수전공, 부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는 차이점이 있다고 설명하다.</p> <p>바. 박형권 의원이 전과 제한 폐지 및 재학연한 폐지는 학생들에게 좀 더 유연한 학사제도이고, 융합연계전공은 전공 선택의 폭을 확장한 제도이므로 찬성하다.</p> <p>사. 박이봉 의원이 학생에게 더 유리한 제도 변경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동의하다</p> <p>아. 조경미 의장이 다른 의견의 개진을 요청하고,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한 후, 학칙 개정(안)에 대해 승인을 선언하다.</p> <p>(2) 평의원회 규정 개정 필요성</p> <p>가. 조경미 의장이 조대수 기획연구처장에게 안건 개요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다.</p> <p>나. 조대수 기획연구처장이 현 동서대학교 평의원회 규정이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제정되었는데,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현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다. 구체적으로 고등교육법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조교 대표가 필요하다고, 의장 선출방식을 기존 평의원회의 복수 추천에 의한 총장 임명 방식에서 평의원회의 호선으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다.</p> <p>다. 남호수 의원이 법령 개정사항이므로 그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해 묻다.</p> <p>라. 조대수 기획연구처장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2 제6항에서 평의원회 규정 개정에 대해 구성원의 의견수렴 절차를 요청하고 있으므로 오늘 평의원회 규정 개정 필요성에 동의하면 방학중 구성원 의견수렴 후 9월 1일 시행으로 규정 개정을 진행하여 9월 중 조교 의원을 선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다.</p>			

간서명 대표	의장		의원		의원	
-----------	----	---	----	--	----	---

- 마. 하병욱 의원이 법령에 의한 개정임에도 구성원의 의견수렴이 필요한지에 대해 묻다.
- 바. 조대수 기획연구처장이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평의원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여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면서, 법령에 의한 개정이므로 의견수렴의 필수성이 약하지만, 구성원과의 소통 강화 측면에서 교직원 연수회와 총학생회 회의를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하다.
- 사. 문동민 의원이 평의회 규정 개정(안)이 마련되면 방학 중 총학생회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수렴을 진행하겠다고 부연하다.
- 아. 백운용 의원이 법령에 따라 현 조경미 의장의 사임과 호선에 의한 의장 재선출 절차를 거치지 말고, 평의회 추인으로 호선을 갈음하는 것을 제안하다.
- 자. 김정수 의원이 백운용 의원의 제안에 찬성하면서 평의회 규정 개정(안)의 부칙으로 명시하는 것을 제안하다.
- 차. 조경미 의장이 다른 의견의 개진을 요청하고,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한 후, 조대수 기획연구처장에게 오늘 나온 의견을 수렴하여 평의회 규정 개정(안) 마련을 요청하고, 이 개정(안)을 다음 회의에서 심의하기로 결정하다.

3. 회의결과 및 폐회

(1) 회의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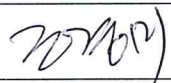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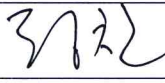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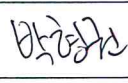
- 가. 조경미 의장이 회의결과를 확인하다.
- 나. 학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평의회 규정 개정 필요성에 동의하다.

(2) 간서명 대표

- 가. 조경미 의장은 회의록 작성을 위해 간서명 대표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하다.
- 나. 하유란 의원이 간서명 대표로 조경미 의장, 정찬 부의장, 박형권 의원을 추천하고, 박이봉 의원이 이에 동의하다.
- 다. 조경미 의장이 간서명 대표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음을 확인한 후 조경미, 정찬, 박형권 의원으로 간서명 대표를 확정하다.

(3) 폐회

이상과 같이 심의를 마치고 폐회를 하니 14시 10분이 되다.

간서명 대표	의장		의원		의원	
-----------	----	---	----	--	----	---



[별첨]

## 학칙 개정(안)

### (1) 학칙 개정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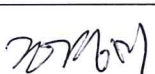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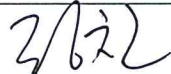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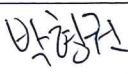
- 교육혁신본부의 융합연계전공 운영안에 대한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함
- 재학연한 폐지(2019.4.1.자)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 (2)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고
제 6 장 학부이동 및 전공변경	제 6 장 학부이동 및 전공변경	
제 20 조(자격) ① 학부이동 및 전공변경은 <u>1회에 한하여</u> 제 2 학년 1학기 초, 제 3 학년 1학기 초 또는 제 4학년 1학기 초에 할 수 있다. 단, 3학년 편입생은 제 3학년 2학기 초 또는 제 4학년 1학기 초에 할 수 있다.	제 20 조(자격) ① 학부이동 및 전공변경은 <u>횟수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며</u> 제 2 학년 1학기 초, 제 3 학년 1학기 초 또는 제 4학년 1학기 초에 할 수 있다. 단, 3학년 편입생은 제 3학년 2학기 초 또는 제 4학년 1학기 초에 할 수 있다.	자구 수정
제 27 조(제적) (생략) 1. - 4 (생략) 5.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제 27 조(제적) (생략) 1. - 4 (생략) 5. (삭제)	5.호 삭제
제 38 조의2(연계전공) ① 2개 이상의 학문분야를 <u>결합하거나 주제들을 중심으로 연결한</u> 연계전공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 38 조의2(융합연계전공) ① 2개 이상의 학문분야를 <u>융합 연계한 융합연계전공을</u>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목 개정 자구 수정
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연계전공은 [별표 5]와 같으며, 제1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다.	② 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u>교육과정 편성 및 이수규정에서 따로 정한다.</u> 기존 연계전공은 [별표 5]와 같으며, 제1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다.	자구 수정
제 45 조(학점인정) ① - ④ (생략) ⑤ 입학 전 산업체 등의 경력, 창업 등의 학습경험에 대해 <u>학점인정심의회</u> 의 심의를 통해 15학점의 범위 내에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학점인정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45 조(학점인정) ① - ④ (생략) ⑤ 입학 전 산업체 등의 경력, 창업 등의 학습경험에 대해 <u>교육과정운영위원회</u> 심의를 통해 15학점의 범위 내에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학점인정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자구 수정

### (3) 부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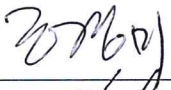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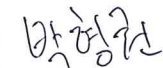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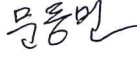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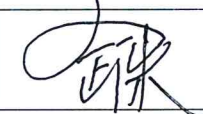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다른규정의 개정) 학칙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 조(자격) ① 학부이동 및 전공변경은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며 제 2 학년 1학기 초, 제 3 학년 1학기 초 또는 제 4학년 1학기 초에 할 수 있다. 단, 3학년 편입생은 제 3학년 2학기 초 또는 제 4학년 1학기 초에 할 수 있다.

간서명 대표	의장		의원		의원	
-----------	----	---	----	--	----	---

## 동서대학교 평의원회 회의록

동서대학교 평의원회 회의			
회의소집일시	2019년 5월 21일(화) 15:00		
일시	2019년 5월 29일(수) 13:00		
재적의원	11명	참석의원	명
장소	뉴밀레니엄관 4층 회의실		
안건	1. 학칙 개정(안) 2. 평의원회 규정 개정 필요성		

2019. 5. 29.

구분	성명	서명(인)	구분	성명	서명(인)
의 장	조경미		부의장	정 찬	
의 원	남호수		의 원	하명욱	
의 원	백운용		의 원	하유란	
의 원	박형권		의 원	문동민	
의 원	김정수		의 원	박이봉	
의 원	김종무	